

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

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< 변경 주요내용 >

- 위메프·티몬 피해기업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설 : 페이지 9, 23, 24

2024. 8. 16.

세종특별자치시장

1. 지원규모 : 연간 550억원

(단위 : 억원)

자금구분	자금별 규모(연간)		대출금리 (변동)
	변경 전	변경 후	
합 계	550	550	
창업	60	60	4.0%
경쟁력강화	150	130	4.0%
혁신형	130	130	3.5%
기업회생	10	10	3.0%
경영안정	200	200	2~3% 보전
긴급경영안정	-	20	

2. 지원대상

-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「별표1」의 '업종별 세부지원대상'과「별표2, 4」의 '자금별 지원조건'에 해당하는 기업

3.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

-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, 휴·폐업중인 기업
-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,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 기업이 주식지분의 30%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
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(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기업)
- 정부,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용자, R&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(누적)을 초과하는 기업(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(<http://sims.go.kr>) 을 통해 확인)

2024년 신규 적용 사항 (제외기업)

- 신청일 현재 자금별 지원 한도액*까지 대출받은 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(일부 중도상환 업체 포함)
 - 단, 중도상환 후 **재용자 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**
- * '24년 신규 선정건부터 한도 적용
- ※ 경영안정자금은 기존과 동일 (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 추천 제외)

4. 지원조건 (자금별 세부지원 사항은 별표2 참조)

① 창업자금 : 60억원 규모

- 시설자금 : 20억원, 연리 4.0%,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
- 운전자금 : 4억원, 연리 4.0%,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

② 경쟁력강화자금 : 130억원 규모

- 시설자금 : 20억원, 연리 4.0%,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
- 운전자금 : 4억원, 연리 4.0%,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

③ 혁신형 자금 : 130억원 규모

- 5억원, 연리 3.5%,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

④ 기업희생자금 : 10억원 규모

- 5억원, 연리 3.0%,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

⑤ 경영안정자금 : 200억원 규모

- 3억원 / 수출 100만불 이상 기업 5억원 (연간 매출액 범위 내)
- 기업과 은행 약정금리 중 2.0%p 이자보전, 2년 거치 일시상환
 - ※ 여성·장애인 기업은 1.0%p 추가보전
 - ※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 기업, 글로벌강소기업,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, 고용노동부 및 세종시 지정 고용창출 우수기업, 스마트공장 도입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은 1.0%p 추가 보전(1회한정)

⑥ 긴급경영안정자금 : 20억원 규모(신설)

- 3억원 / 수출 100만불 이상 기업 5억원(연간 매출액 범위 내)
 - ※ 위메프·티몬 사태 직·간접 피해업체
- 기업과 은행 약정금리 중 2.0%p 이자보전, 2년 거치 일시상환
 - ※ 1% 추가보전 : 경영안정자금과 동일

◆ 2021년부터 신규 지원된 세종시 자금 전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

《주의사항》

-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업·폐업 또는 세종지역 이외로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자금지원이 중단됩니다.
-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(약정)에 의합니다.
- 상기 자금별 대출금리를 적용하되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시에는 별도 공고에 의해 분기별 대출 금리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.
- 경영안정자금 실행 후 타은행으로 변경(대환) 불가합니다.
-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는 자금 지원 중단 및 지원 제외(3년간)
- 자금 사용 완료시, 1개월 내 사업보고서 필수 제출
- (추가) 세종특별자치시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확인 시, 자금지원 중단 및 지원이자 환수 등이 발생합니다.

5. 신청 및 접수

접수기관 및 문의처	접수기간
(재)세종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◦ (문의처) ☎ 044-850-2147, 044-850-2142 ◦ (주 소) (30033)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5, 세종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4층 415호	~ 2024. 12. 10. (자금 소진시까지)

○ 신청 시 구비서류

① 자금용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
- 창업자금, 경쟁력강화자금, 혁신형자금 → (별지 제1호) 서식
- (긴급)경영안정자금, 기업회생자금 → (별지 제2호) 서식

② 공장등록증(공장면적 500㎡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)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

③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(1년이상 사업체, 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)

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(전년도)

⑤ 시설계약서,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자료(별표3 참조)

⑥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(별지 제3호)

⑦ 위메프·티몬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(별지 제4호)

⑧ 위메프·티몬 피해 사실 확인서(별지 제5호)

○ 시행완료 후 제출서류

①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(별지 제9호)

6. 용자대상자 선정

- 방 법 : 시 조례의 용자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함
- 통 보 : 15일 이내(신청서 접수일로부터)
- 자금별 용자 취급 은행

《 ①~④ 창업 외 4개 자금 협약은행(7개) 》

- | | | |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▶ 하나은행 | ▶ 신한은행 | ▶ 기업은행 | ▶ 국민은행 |
| ▶ 농협은행 | ▶ 우리은행 | ▶ 산업은행 | |

《 ⑤~⑥ 경영안정자금 협약은행(11개) 》

- | | | |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|
| ▶ 하나은행 | ▶ 신한은행 | ▶ SC제일은행 | ▶ 신협은행 |
| ▶ 농협은행 | ▶ 우리은행 | ▶ 전북은행 | ▶ 수협은행 |
| ▶ 기업은행 | ▶ 국민은행 | ▶ 새마을금고 | |

※ 단, "지역농업협동조합", "신용협동조합", "새마을금고" 는 세종시 소재 지점에 한함

【별표 1】

업종별 세부지원대상

※ 공통적용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의 중소기업

지원업종	세 부 지 원 대 상 업 종
제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조업 전업률이 30%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※ 제조시설면적 500㎡미만 소기업은 건축법에 따른 제2종근린 생활시설 및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※ 품목코드 33402, 33409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오락용품 제조업은 제외 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소기업 중 제조업 ○ 「중소기업 창업지원법」에 의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
건설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식 산업센터 건설사업자
지식 서비스 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산업발전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기본으로 하되,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4, 5 참고

※ 상기 업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

※ 상기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용자 제외대상(단, 제조업 영위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)

【별표 2】

자금별 지원조건

1. 창업자금·경쟁력강화자금

종 류	시 설 투 자 자 금	운 전 자 금
용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공장 및 건축 소요자금 ◦ 공장의 신설, 증·개축 소요자금 및 부지매입 비용 ※ 부지매입비는 공장 건축허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◦ 기계설비 등 생산(서비스) 시설의 신규 구매·개체 소요자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시설투자 자금으로 설치된 시설의 운전자금 또는 경쟁력강화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
용자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20억원 이하 (한도내에서 2회 분할 신청가능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4억원 이하 (한도내에서 2회 분할 신청가능)
용자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8년 이내(3년 거치, 5년 균분상환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5년 이내(1년 거치, 4년 균분상환)
용자금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연리 4.0% 	
대출기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	
비 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창업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하인 기업만 해당 	

2. 혁신형 중소기업자금

종 류	시 설 및 운전자금
용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벤처·이노비즈(Inno-Biz)·메인비즈(Main-Biz)·우수신제품(NEP) 및 신기술(NET) 인증 기업 ◦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·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◦ 최근 3년 이내 대학·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◦ 최근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성공 판정을 받고 사업화하려는 기업
용자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5억원 이하 ※ 건당 1회
용자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5년 이내(2년 거치, 3년 균분상환)
용자금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연리 3.5%
대출기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용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

3. 기업희생자금

종 류	운 전 자 금
용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의 3%이상 피해를 입은 기업 (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장(읍·면·동장)으로부터 재해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) ◦ 기업구조조정, 장기노사분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
용자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5억원 이하 - 생산에 필요한 원·부자재 구입비, 기타 기업경영 소요 경비 - 근로자 임금지급에 소요되는 자금 등
용자기간	◦ 3년 이내(1년 거치, 2년 균분상환)
용자금리	◦ 연리 3.0%
대출기한	◦ 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

4. 경영안정자금

종 류	운 전 자 금
용자대상	◦ 사업개시 3년 이상 경과 한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 기업 중, 해당 업종 전업률 30% 이상, 최근 3개년 이상 매출액이 발생한 기업
용자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3~5억원 이하(연간 매출액 범위 내) - 일반기업 3억원,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이상 기업 5억원
용자기간	◦ 2년 거치 일시상환
용자금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(변동금리)중 2.0%p 이차보전 -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기업, 글로벌강소기업,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, 고용노동부 및 세종시 지정 고용창출우수기업, 스마트공장 도입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은 1.0%p 추가보전(1회에 한함) - 여성·장애인 기업은 1.0%p 추가보전
대출기한	◦ 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
비고	◦ 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은 추천 제외


5. 긴급경영안정자금(신설)

종 류	운 전 자 금
용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사업개시 1년 이상 경과한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 기업 중, 해당 업종 전업률 30% 이상, 최근 1개년 이상 매출액이 발생한 기업으로 - 위메프 또는 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중소기업 ※ 증빙서류 : 위메프·티몬 거래내역, 기타 거래 증빙자료 등
용자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3억원 이하
용자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2년 거치 일시상환
용자금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(변동금리)중 2.0%p 이차보전 -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기업, 글로벌강소기업,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, 고용노동부 및 세종시 지정 고용창출우수기업, 스마트공장 도입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은 1.0%p 추가보전(1회에 한함) - 여성·장애인 기업은 1.0%p 추가보전
대출기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
비 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신청기한 : ~ '24.12.10. (자금소진 시까지)

【별표 3】

가점 및 감점부여 대상 기업

가. 가점대상

- ① 「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」 제9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(5점)
- ②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(여성기업 확인서 첨부)(5점)
- ③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(장애인기업 확인서 첨부)(5점)
- ④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중소기업(5점)
- 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(3점)
- ⑥ 법인의 경우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(생산공장) 모두를 두는 기업(5점)
- ⑦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소기업(2점)
- ⑧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(3점)
-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정한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(5점)
- ⑩ 중소기업육성 유공 관련 정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표창 수상 기업(5점)
- ⑪ 세계일류상품 육성기업 및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사업 참여기업(3점)
- ⑫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수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(3점)
- ⑬ 중소기업육성시책(해외시장개척, 수출기업인협의회 등) 참여기업(5점)
- ⑭ PL보험 가입기업(2점)
- ⑮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(5점)
- ⑯  KC, GR, ISO9000:14000, TS16949 인증기업(3점)
- ⑰ ANSI, BSI, CE, CSA, e-마크, ECO, GOST, FCC, FDA, GS, IECEE, JIS, PSE, SASO, S-마크, UL, VDE 등 외국규격 인증기업(3점)
- ⑱ 정부로부터 녹색기업인증을 받은 기업(5점)
- ⑲ 세종특별자치시 품질경영교육을 받은 기업(교육필증 첨부)(5점)(1회로 한정한다)
- ⑳ 지역인재 채용기업
 - 신청일부터 1년 이내 신규채용 직원 중 지역인재(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) 3명 미만(3점)
 - 신청일부터 1년 이내 신규채용 직원 중 지역인재(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) 3명 이상(5점)
- ㉑ 스타기업, 지역혁신선도기업, 나눔명문기업 선정기업(3점)
- ㉒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한 방침(공고)에 따른 기업

※ 최대 10점의 범위에서 각 항목별 중복으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나, 같은 항목 내에서 중복으로 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

나. 감점대상

- ① 종전의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 실행률이 80%이상 95%이하(-5점)
- ② 종전의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 실행률이 80%미만(-10점)
- ③ 기타 시장이 정한 방침(공고)에 따른 기업

【별표 4】

지식서비스산업 중 지원대상 세부 업종

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(산업발전법 시행령 '22.7.5. 개정)

※ 노란음영 : 지원업종

해 당 업 종	산업분류번호
○환경 정화 및 복원업	E39
○도매 및 상품중개업	G46
○전자상거래업	G47911
○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	H52991
○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	J581
○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J582
○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	J5911
○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	J5912
○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	J59201
○전기통신업	J612
○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	J62
○정보서비스업	J63
○연구개발업	M70
○법무관련 서비스업	M711
○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	M712
○광고업	M713
○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	M714
○경영컨설팅업	M71531
○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	M72
○수의업(獸醫業)	M731
○전문디자인업	M732
○번역 및 통역서비스업	M73902
○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	M73903
○물품감정, 계량 및 견본 추출업	M73904
○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73909
○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	N74100
○보안시스템 서비스업	N75320
○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	N75991
○전시 및 행사 대행업	N75992
○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(신용정보를 수집·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)	N75993
○포장 및 충전업	N75994
○온라인 교육 학원(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	P85503
○기술 및 직업훈련학원	P8566
○병원	Q861
○의원	Q862
○기타 보건업(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)	Q869

【별표 5】

지식서비스산업 중 지원제외 업종

〈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준용 〉

※ 주황음영 :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해당

업종 분류	산업분류코드 (KSIC)	용자제외 업종
제조업	33402 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건설업	41 ~ 42	건설업(단,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(41225), 환경설비 건설업(41224), 조경 건설업(41226), 배관 및 냉·난방 공사업(42201), 건물용 기계·장비 설치 공사업(42202), 방음, 방진 및 내화 공사업(42203), 소방 시설 공사업(42204), 전기 및 통신공사업(423)은 지원가능 업종)
도매 및 소매업	46102 中	담배 중개업
	46~47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,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, 주류, 담배 소매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(단,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)
	47859 中	성인용품 판매점
	47993 中	다단계 방문판매
숙박 및 음식점업	5621	주점업
정보통신업	58 中	경마, 경륜,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,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	59142	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
정보서비스업	63999 中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,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(63999-1)
금융 및 보험업	64 ~ 66	금융 및 보험업(단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(66199)은 지원 가능)
부동산업	68	부동산업
전문서비스업	711~2	법무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
	7151	회사본부
수의업	731	수의업
사업 지원 서비스업	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
	75999 中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
임대업	76390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84	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
교육서비스업	851~854	초·중·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
	855~856 中	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
보건업	86	보건업 (단,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)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	9124	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	91291	무도장 운영업

협회 및 단체	94	협회 및 단체 (단, 「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」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)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
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	97~98	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
국제 및 외국기관	99	국제 및 외국기관

*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용자 제외

** 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소상공인은 용자 제외

【별지 제4호】

위메프·티몬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

본인은 위메프·티몬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 유의사항 및 자금 지원 기준을 확인하였고, 자금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1. 원활한 적격여부 심사를 위해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, 서류가 누락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2.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3.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세종특별자치시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확인 시, 자금지원 중단 및 지원이자 환수 등이 발생합니다.

2024. . .

(신청인) 기 업 명 : (인)

주 소 :

대표자명 : (인)

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

